

정보통신부분에서의 무역상 기술 장벽 자유 지역(TBT Free Zone)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

이용규** · 천지은***

논문 요약

본 연구는 ICT분야에서 적합성평가에 의해 생성된 무역상 기술장벽(TBT)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TBT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무역상 기술장벽 자유 지역(TBT Free Zone)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성선언제도(SDoC)의 도입,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및 시험-인증 기반 구축 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BT Free Zone의 현황을 파악하여 확대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가인 중국, 일본, 인도 등과 동시 다발적인 협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중동 및 중남미의 지역 선도국가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체결하여야 한다. 셋째, 적합성평가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지원은 점증적으로 확대하되 국가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식을 취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의 MRA 2단계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TBT제거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무역상 기술장벽, 무역상 기술장벽 자유지역, 적합성평가제도

* 이 논문은 2015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I.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국가 간 교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 정부는 자유로운 교역의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최초로 칠레(2004년 4월 1일 발효)와 체결한 이후, 미국, 유럽연합(이하 EU) 등과 같은 선진-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또 다른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¹⁾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 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됐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토는 세계 전체시장의 73%이며, 이는 칠레(85.1%), 페루(78.0%)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된다.²⁾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의 또 다른 장애물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이하 NTBs)인데, 이는 관세장벽을 제외한 모든 교역장애를 포괄하고 있어 대단히 광범위하다. 이 중에서 국제기구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주제 중의 하나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Procedure for Conformity Assessment) 등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이며, 이는 상황에 따라 심각한 교역의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요건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WTO는 모든 회원국이 자동으로 TBT협정(Agreement on TBT)³⁾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WTO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관점에서 “세계 무역의 확대”와 “공정한 교역기회의 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백종현 외, 2006),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무역제한조치⁴⁾와 국가 간의 통상이슈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호무역주의의 유

1)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발효된 FTA가 9개(예: 한-터키, 2013년 5월 1일), 서명/체결된 FTA가 3개(한-호주 FTA) 그리고 협상 마무리 단계인 FTA 8개(한-중) 및 협상 준비/검토 중인 FTA가 7개(한-중미) 등이다. (<http://www.customs.go.kr> 참고)

2) “전 세계 경제영토 73% 확보...관세부담 年 최대 54억弗 줄어든다”, <MK뉴스>, 2014년 11월 10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08711>) (2015년 6월 1일 접속)

3) TBT협정은 회원국이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적합성평가의 채택 시 ‘조화(Harmonization)’와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화’의 원칙이란 WTO회원국이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procedures for assessment of conformity)를 국제규격에 기초하여 제·개정토록 하자는 것이며, ‘투명성’의 원칙이란 이렇게 채택된 또는 합법적 목적에 근거하여 회원국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표준, 기술규정 등을 모든 회원국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배성수·김은정, 2012).

4) 신규무역제한조치란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조치(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조치(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분한다(WTO/OECD/UNCTAD 사무국, 2012).

형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WTO, 2012). 예를 들면, 1995년 WTO 출범 이후 2013년 12월까지 총 406건의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 STC)이 제기되었으며, 2006년 이후 제기 건수의 증가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제기된 STC도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STC는 증가하고 있다(남상열, 2014).⁵⁾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정뿐만 아니라 FTA 협정에서도 관세 감축과 더불어 비관세장벽 부분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Johnson, 2008).

TBT는 재화 및 서비스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준도 국가마다 각기 다르다.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분야에서의 TBT는 미국 등 서방세계가 주도하여 마련한 국제규격을 도입하지 않고, 각국이 사정에 따라 독자적인 규격을 제정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TBT가 실질적으로 교역장애가 되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ITC, 1998; OECD, 1999).

이에 따라 WTO, OECD, 국제인정기구협의회의(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APEC 등을 중심으로 ICT분야에서 TBT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기구에서 제안된 방식은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이하 MRA), 자기적합성선언제도(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이하 SDoC)⁶⁾의 도입 그리고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등이다. 이들 제도는 각기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단점이 다르며,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나 수준도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가 ICT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내수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710억이며, 이는 세계 규모순위에서 9위에 머물고 있어 전 세계 시장의 1.9%, 중국시장의 22.6%에 불과한 매우 협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000억이며, 이는 전 세계 5위권으로 중국, 미국, 대만보다는 뒤지고 있으나 일본(6위)보다는 앞서는 순위이다.

최근 수년간의 OECD,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⁷⁾ 등 복수 기관의 조사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은 출시 주기가 1년 이내로 더욱 짧아지고 있다. 아울러, 2013년 기준으로 한국,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스마트폰의 교체주기는 2년 이내이며, 연간 교체

5) 남상열(2014)에 따르면, 1995~2013년까지 TBT위원회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 STC)은 총 406건이며, 이중 약 80%가 기술규정과 관련된 사안이며, 약 20%는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사안이나,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사안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 자기적합성선언제도(SDoC)란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인증을 필요로 하는 강제 인증제도에서 벗어나, 공급자가 스스로 자신의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기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증하는 제도로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7) <https://www.strategyanalytics.com>

율이 50%가 넘는 국가(예: 미국, 칠레, 한국 등)도 있다.

TBT를 제거/완화하면 수출국가의 기술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제조업체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어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된다(강병구, 2001).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처럼, ICT분야에서도 TBT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역(TBT Free Zone)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ICT분야에서 적합성평가에 의한 생성된 TBT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 개발, 즉 무역상 기술장벽 자유지역(이하, TBT Free Zone)의 확대전략 개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의한 TBT의 제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적합성평가 분야에 의한 TBT 제거 방안에만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각국의 기술규정 및 표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은 WTO에 STC를 제거하는 방법 등 매우 제한적이어서 별도의 전략이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 적합성평가분야는 각국이 상이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상이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여 이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TBT Free Zone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이의 확대도구, 현황 등을 파악할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가별 특성에 부합하는 확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TBT Free Zone의 개념 정의와 확대 도구

1. TBT Free Zone의 개념 정의

무역상 기술장벽 자유지역(TBT Free Zone)이란 용어는 과거에 정의된 적이 없는 용어이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된 단어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TBT란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뜻이며, 이는 무역 상대국들이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표준(Standard),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⁸⁾.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의무적 서명사항인 TBT협정(Agreement on TBT)은 자유 무역을 활성화를 위해 TBT를 낮추고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준비, 채택 및 적용

8) www.wto.org 참고

하는데 있어서 국제 규격과 “조화(harmonization)”를 요구하고 있으며,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적합성평가부분에서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들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수용토록 하고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합성판정기관에 대하여 자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⁹⁾.

ICT 분야에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란 국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주요한 기반 구조인 공중 통신망을 외부의 전기적 또는 물리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통신망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기술적 요구 조건이며, 정부가 관장한다.¹⁰⁾ 따라서 기술규정은 법에 근거한 강제표준이다. 또한, 적합성평가란 ICT 분야의 제품, 서비스, 공정, 시스템 등이 법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합성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제1자, 제2자 그리고 제3자로 구분된다. 제1자에 의한 방식을 SDoC라고 지칭하고, 제2자 방식은 구매자에 의한 조달검사방식이며, 제3자에 의한 방식을 인증(certification)이라고 지칭한다.

적합성평가는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위탁방식으로 민간기관이 수행하기도 한다. 아울러, 강제표준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적합성평가절차도 국가에 따라 제품별로, 기능별로 적용하는 절차가 다소 다르다. 예를 들면, 전자파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이하, 전파파 적합성, EMC)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이하, 전자파 장애, EMI)와 Electro Magnetic Susceptibility(이하, 전자파 내성, EMS)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출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미국은 EMI만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EMI, EMS 모두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EMC는 인증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적합등록을 적용하는 분야이며, 정부에 의해 지정된 시험기관에 의해 수행된 시험성적서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적합등록분야이기는 하지만, ISO 17025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전자파가 미약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EMI 시험성적서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자파 인증마크가 임의인증일지라도 VCCI마크를 획득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워 EMI 시험성적서는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국가마다 동일한 분야라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시험분야, 방식, 시험의 주체 및 시험비용 등이 상이하다. 전문가를 보유한 대기업에게는 이러한 상이점이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지만,

9) www.wto.org 참고

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 용어 사전”(http://word.tta.or.kr).

전문가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적합성평가가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통신분야에서 TBT Free Zone이란 제조업체가 ICT제품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TBT가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제조업체의 관점에서는 절대적 개념의 TBT Free Zone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TBT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TBT

Free Zone은 기술규정, 표준 그리고 적합성평가시스템과 관련된 법제도가 국제표준이나 관행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2. TBT Free Zone 확산 도구

TBT는 각국이 기술규정, 표준과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규격에 조화(harmonization)하게 하고, 투명(transparency)하게 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국가가 기술규제, 표준을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률을 제·개정하면서, 상기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TBT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통상적으로 WTO에 STC를 제기하여야 해결될 수 있다. ICT 부분의 적합성평가부분에서는 TBT는 특정 국가가 적합성평가부분을 국제 규격과 다르게 운용하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식이 존재한다.

TBT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출국가에서 수행된 시험 및 인증 결과를 수입국에서 수용할 수 있다. 즉,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이하 MRA),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상호수용방안을 통하여 상대국가에서 수행된 시험 및 인증결과를 인정할 수도 있다. 또한 SDoC제도를 도입하면, 역외 제조업체가 상대국가에서 요구하는 적합성평가결과를 비교적 용이하게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ICT 기기제조업이 거의 부재하여 시험/인증 기술이나 기관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에는 외국 자본에게 적합성 평가업무를 개방할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당사국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T 분야에서 적합성평가의 상이성으로 인한 TBT를 실질적으로 제거/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MRA 체결, 적합성평가제도에 SDoC의 도입,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상호수용 및 시험-인증 기반(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나 병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쌍방 국가가 합의하면 MRA도 체결하고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상호수용도 가능하다.

1) MRA 체결

ICT 분야에서 제조업체는 수입국가의 강제표준 인증마크를 취득해야만 수출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자 MRA를 체결하는데, 양 국가 간에 MRA 1단계를 체결하면

수출국가에서 실행된 시험성적서만이 인정되며, MRA 2단계를 체결하면 시험성적서 및 인증마크 모두를 수출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다.¹¹⁾ 현재 MRA는 다양한 영역과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¹²⁾, ICT 분야에서는 이의 활용 방식도 진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APEC이 주도하여 MRA에 규격의 동등성

(equivalence) 개념을 도입하여 MRA-ETR(Euivalence of Technical Regulation) 모형을 탄생시켰으며, 최근에서는 이 모형에 시험성적서의 상호수용에 있어서 APLAC 등 국제인정기구협의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모델이 만들어져 논의되고 있다(이용규, 2015).

ICT 분야에서 MRA를 체결하면, 상대국 시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한편 상대국 제조업체에게 자국 시장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익과 손실이 상존하지만, ICT 제품시장에서 다수 국가가 경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은 미세하고 편익은 이보다 큰 것이 자명하다. 즉, 시장손실은 MRA를 체결한 특정 국가에 의한 부분에 한정되지만, 이익은 상대국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지니므로 이의 규모는 클 것이다.

MR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나 인증서의 효력이 반드시 MRA 협정국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이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에 가져와 FCC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도 받고, KC 마크 인증에 필요한 성적서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내 FCC 지정 시험기관이란 FCC가 요구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FCC 규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 준 것이어서 제품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FCC MRA 시험 성적서를 받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어 MRA에 대한 효력을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다.

ICT 분야는 APEC 회원 국가 간에는 이 기구에서 마련한 MRA Guide를 사용하면 협정 문안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칠레, 베트남 등과 MRA 1단계를 체결하였으나, 효과는 미국과 MRA의 경우에서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용규, 2014). 그 외의 국가와의 MRA는 상대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예: 칠레), 상대국가에게 제시된 시험성적서의 숫자가 적거나(예: 베트남, 캐나다), 교역물량이 적어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2) SDoC 제도 도입 요청

11) www.apec.org 참고

12) 예를 들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범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아 공인된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AEO분야 MRA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다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SDoC제도란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인증을 필요로 하는 강제 인증제도에서 벗어나, 공급자가 스스로 자신의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가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증하는 제도로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SDoC는 사후적-사법적 제도이어서, 제조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자신의 회사는 물론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인식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만 도입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사회적 신뢰성(social trust)은 물론 보험제도,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도입 가능한 제도이다.

SDoC는 인증제도와 비교하여, 비용절감, 시간절약, 제품정보보호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안전문제 등에 있어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market surveillance)가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WTO's TBT Committee는 특정한 제품인 경우에는 SDoC가 MRA보다

TBT 제거수단으로 효율적이라고 제안하였다(OECD, 2000). 이는 ICT 제품의 시장 진입에 요구되는 인증마크 획득과정의 단순화에 따른 수혜가 역내 제조업체에게도 주어지지만 역외 제조업체에게 주어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EU와 FTA 체결 시 시장개방의 수단으로 EU측이 강력하게 SDoC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전파법이 2013년에 개정되어 위험성이 낮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SDoC제도의 도입은 제도도입 요청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제3국에게도 편익을 주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처럼 SDoC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제품에게만 SDoC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3)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수용

ICT 분야에서는 MRA를 체결하는 방식이외에도 상대국 혹은 제3국에서 산출된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주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ILAC(APLAC)과 CB Scheme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수용방식이 '개방적'이나 '배타적' 이냐에 따라 협정 비당사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Donahue, 2000; 김동휴 외, 2013). 그러나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 혹은 지역공동체와의 상호 인정협정형태보다는 자국 제도를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역외에서 생성된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는 방식이어서 이의 편익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ILAC 혹은 APLAC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는 방식: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이하 ILAC)이나 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이하 APLAC)의 정회원 혹은 MRA 서명 회원국가의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산출된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ICT분야에서는 민간인증제도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표준분야에서는 호주가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활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현재 ILAC에는 2014년 현재 59국가가 정회원(Full Member)로 참여하고 있으며, ILAC의 지역위원회인 APLAC에는 22개국이 MRA 서명회원(Full and Signatory APLAC MRA)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KOLAS가 참여하고 있다.

② CB scheme에 의한 시험성적서 인정방식: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for Conformity Testing to Standards for Electrical Equipment: IECEE)가 제정, 운영하는 전기전자제품 안전 관련 국제 인증 제도로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국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CB scheme에 참여하는 국가와 인증기관간의 다자간 협정이다. 기업은 하나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가지고 CB Scheme 상의 모든 나라의 국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¹³⁾.

CB Scheme은 국제규격(IEC Standard)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만약 어떤 회원국의 시험규격이 국제규격과 완전하게 조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국가 간의 차이(national deviations)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선언해야 한다. 시험 제품이 적절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관련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만족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CB Scheme은 CB 시험인증서(Test Certificates)를 이용한다. CB Scheme의 기본 개념은 “one product, one test, one mark, where applicable”이다. 이와 같은 기본 개념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각국의 규격을 국제규격과 조화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CB Scheme의 최종 목표이다.

CB Scheme에의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는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를 인정하거나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자국의 국가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 이하 NCB)를 지정해야 한다. CB Scheme하에서 NCB가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은 NCB가 인정한 규제 규격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하다. 2014년 현재 43개 회원국, 60개 NCB, 그리고 약 165개의 CB 시험소(CB Testing Laboratories, 이하 CBTL)로 구성되어

13) www.iecee.org 참고

있다. EMC 분야도 포함되어 있어, CB Scheme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가 ICT 제품의 상대국가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시험-인증 기반(인프라) 구축 지원

ICT 분야의 기술수준, 산업발전 수준 등이 국가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의 상당수는 아직 독자적으로 강제표준에 관한 법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합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나 인증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인근 국가의 법제도를 준용하든지,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성적서를 인정해 주든지, 다른 국가의 인증마크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외로부터 ICT 기기를 수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TBT는 일견 낮아 보이나, 적합성평가제도의 높은 불완전성이 역외 제조업체에게는 시장진입의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이들 국가는 자국의 법제도, 적합성평가시스템의 완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서방 선진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자국의 기술규제, 표준 및 적합성평가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RAPA), 국립전파연구원(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RR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등이 중심이 되어 이들 국가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5) 확산 도구간 비교 분석

앞에서 언급한 제도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효과의 범위, 효과의 강도 및 우리나라 활용여부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1〉 확산도구 간 특징 비교분석

	MRA	SDoC	국제공인인증서상호수용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ILAC(APLAC)	CB Scheme	
효과의 범위	협정대상국	모든 국가	참여국	참여국	수혜국가
효과의 강도	단계적	제도 적용 제품에 한정	수용영역별	수용영역별	지원 수준에 따라 상이
현재 우리나라의 활용여부	5개 국가와 1단계 체결 완료 그리고 수개 국가와 협상 중	위해도 낮은 제품에 적용	민간 표준 분야	EMC 분야는 미활용	지원 중
비고	더 많은 국가와 상위 단계 추진 필요	단기적으로는 적용제품 확대 필요성이 낮음	외국의 수용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	외국의 수용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	지원 증대 필요

MRA는 체결 당사국 모두가 편익을 누리는 제도이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5개국과 1단계 협정만을 체결한 상태이다. 향후에는 더 많은 국가와 상위단계의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가장 많은 국가와 MR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SDoC제도를 위해도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특성상 혜택은 모든 국가가 돌아가고 있으므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은 장기적과제로 남겨 놓아야 한다. 국제공인인증서 상호수용 방식은 적합성평가제도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어서 타국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Ⅲ. TBT Free Zone 현황과 확대 전략

1. TBT Free Zone 현황

우리나라는 ICT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해외에 수출할 때 정도의 차이일 뿐 모든 국가에서 TBT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관점에서 TBT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 한편, TBT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능한 지역도 없다. 즉,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관점에서 TBT가 없다는 것은 해당국의 시장에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과 비용이 크며, 특허 등 기업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이다.

국가마다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제도가 각기 달라 이에 의한 TBT 수준도 상이하다. 국가별로 각기 다른 TBT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었다.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생산측면에서 가격차 방법(price-wedge method), 목록 활용방법(inventory-based approaches), 설문조사방법(survey-based approaches)이 활용되고 있다(Beghin and Bureau, 2001). 이외에도 소비자 측면에서 위험평가를 이용한 비용편익 측정방법(risk-tariff measurement) 등이 있다(장용준·서정민, 2014).¹⁴⁾

상기에서 언급된 방안은 기술규제,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의한 TBT 전체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적합성평가방식에 한정하여 TBT의 수준을 조사하므로 상기에서 언급된 방식을 활용하기가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¹⁵⁾를 주된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국가의 적합성평가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문서를 분석해서 국가별 적합성평가시스템을 조사하고, 현재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얻은 각국의 적합성평가시스템에 대하여 먼저, 적합성평가시스템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전-행정적 시스템인지 혹은 사후-사법적 시스템인지를 조사하고¹⁶⁾, 둘째, SDoC 제도 도입국가인 경우, 이 제도의 ICT 제품에 대한 적용범위를 조사하고, 셋째, 적합성 평가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완성도 수준과¹⁷⁾, 넷째, MRA 등의 체결국가 및 국제공인인증서수용 국가 여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어떠한 경로로 시험-인증을 받아 수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TBT Free Zone을 TBT 수준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누고, TBT가 가장 낮은 지역을 1급 지역으로, 가장 높은 지역을 4급 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1급 TBT Free Zone이란 ICT 부분의 기술기준, 표준 및 적합성평가시스템이 국제규격을 준수

14) 여기에서 언급된 방법론 이외에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력모형 이용방법(Gravity-based approaches)은 독립적인 TBT 측정 방식이라기보다는 기록물 이용방법과 설문조사 이용방법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장용준·서정민, 2014).

15) 본 연구에서 참여한 전문가는 지정시험기관, 국책연구기관, 정부기관의 임직원 8명이다. 이들과는 필요시 전화 및 대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6) 본 연구에서 사전-행정적 시스템이란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정부기관(민간위탁의 경우 포함)에 의한 엄격한 사전 시험-인증과정을 거치도록 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후-사법적 시스템이란 신제품의 출시가 제조업체 혹은 유통업체의 선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진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제조업체에게 제조물책임법(PL) 등에 의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의미한다.

17) 참가한 전문가는 시험기관의 임직원(예: K 지정기관의 K사장, R이사, S전자 지정시험소 K씨), 전문연구기관(예: RAPA C원장, KSA B 연구원), 미래부 관계자 등이다.

하고 있으며, SDoC 제도를 폭 넓게 운영하고 있거나, 우리나라와 MRA 2단계를 체결하고 있어 국내에서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에 필요한 시험과 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이 등급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EU이다.

2급 TBT Free Zone이란 ICT 부분의 기술기준, 표준 및 적합성평가시스템이 국제규격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MRA 1단계를 체결하고 있거나, ILAC(APLAC) 인정시험기관 혹은 CB Scheme의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어 ICT 기기 수출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처리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 등급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3급 TBT Free Zone에 속하는 지역은 두 분류가 존재한다. 첫째 분류는 ICT 부분의 기술기준, 표준 및 적합성평가시스템이 국제규격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시험이나 인증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을 지칭하며, 여기에 속하는 지역이 일본 등이다. 둘째 분류는 기술기준, 표준과 적합성평가제도와 관련된 법제도를 완비하지 못한 지역이다. 이러한 국가는 대체로 ILAC(APLAC) 인정 시험기관의 성적서나, FCC나 CE 마크 등 선진국 인증을 받은 제품의 성적서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ICT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부여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스리랑카,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몽고, 네팔 등이다.

4급 TBT Free Zone이란 ICT 부분의 기술기준, 표준 및 적합성평가시스템이 국제규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거나, ICT 기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제표준 인증마크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제품의 샘플을 보내서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지역은 중국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기준을 가지고 주요 국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TBT Free Zone 현황 조사

번호	국가명	IT관련 수출량 (천\$)	우리나라 총수출 (천\$)	GDP (\$)	지역 공동체	FTA	MRA	TBT 등급
1	중국	57,125	145,287	6,747	APEC	협상진행	추진 중	4
2	홍콩	17,236	27,256	37,777	APEC			2
3	미국	13,176	70,284	53,101	APEC	발효	2단계추진 중	2
4	베트남	7,369	22,351	1,901	APEC	협상진행	1단계 체결	2
5	대만	5,194	15,077	20,930	APEC			2
6	싱가포르	5,123	23,749	54,775	APEC	발효	추진 중	2
7	일본	4,747	32,183	37,539	APEC	협상진행		2
8	필리핀	3,421	10,032	2,790	APEC	확대 중		2

9	브라질	2,904	8,922	11,310		협상준비		3
10	멕시코	2,727	10,846	10,629	APEC	조성		3
11	말레이시아	1,720	7,582	10,547	APEC	협상준비		2
12	인도	1,707	12,782	1,504		발효	추진 중	3
13	슬로바키아	1,533	4,298	17,706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14	독일	1,471	7,570	44,999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15	폴란드	1,351	3,849	13,393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16	영국	1,102	5,782	39,567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17	터키	961	6,664	10,815		발효		3
18	네덜란드	721	5,296	47,633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19	태국	677	7,599	5,674	APEC	확대 중		2
20	아랍 에미리트	641	7,211	43,875		조성		3
21	오스트리아	467	937	48,956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22	프랑스	431	2,639	42,999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23	이란	423	4,162	4,750				3
24	캐나다	404	4,916	51,989		타결	1단계 체결	2
25	인도네시아	345	11,360	3,509	APEC	협상진행		2
26	이탈리아	304	3,473	34,714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27	러시아	276	10,129	14,818	APEC			2
28	헝가리	266	1,481	13,404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29	스페인	235	2,068	29,150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30	아르헨티나	233	753	11,766		협상준비		3
31	이집트	214	2,363	3,225				3
32	스웨덴	187	871	57,909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33	오스트 레일리아	181	10,282	62,821	APEC	타결		1
34	사우디 아라비아	153	8,287	24,847		조성		3
35	슬로베니아	141	1,665	22,756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36	체코	138	1,812	18,857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37	이스라엘	112	1,224	37,035		협상준비		3
38	남아프리카 공화국	100	1,475	6,620				3
39	칠레	73	2,083	15,775	APEC	발효	1단계 체결	2
40	카자흐스탄	71	906	12,843				3
41	페루	59	1,391	6,674	APEC	발효		2
42	아일랜드	57	463	45,620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43	콜롬비아	45	1,509	8,097		타결		3
44	벨기에	42	2,454	45,383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45	루마니아	41	597	8,910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46	몰타	37	1,014	22,872	EU	발효	체결 불필요	3
47	알제리	36	1,417	5,437				3
48	포르투갈	36	493	20,727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49	핀란드	35	340	47,129	EU	발효	체결 불필요	1
50	쿠웨이트	33	1,975	47,639		조성		3

상기 도표를 따르면, TBT의 관점에서 중국이 4등급이며, 중동국가,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가 3등급, 미국, 캐나다, 베트남, 칠레, 일본 등이 2등급이 속하며, EU 지역 국가가 1등급에 속한다. 현실적으로는 TBT 등급보다는 수출에 장애가 적은 국가도 있다. 예를 들면, 중동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SASO 인증의 경우에는 국내 대행 전문회사가 있어, 이들에게 인증업무 의뢰하면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량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IT 관련 수출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홍콩, 미국,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일본, 브라질, 멕시코 순이다. 홍콩의 경우에는 수출된 제품이 현지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제품이 제3국으로 재수출되기 위한 경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홍콩에 대한 수출의 실질적 중요성은 수치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품 수출인 경우에는 시험-인증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부품 수출량이 많은 중국의 경우에도 실제 중요성이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입량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TBT 제거를 위한 협정은 우리나라의 시장도 개방하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입물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APEC의 회원 국가는 MRA Guide 등을 이용하면 협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아울러, EU 가입 국가는 우리나라가 이미 EU와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에게는 매우 개방되어 있는 국가군이다. 그러나 중동국가, 중남미지역은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특정한 경제공동체가 부재하여, 개별 국가와의 협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2. TBT Free Zone 확대 전략

TBT Free Zone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은 우리나라 ICT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화와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중장기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기적 차원에서 TBT Free Zone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다소 수동적으로 미국, EU 등의 국가와 FTA 체결 시 이들 국가의 요청으로 MRA 1단계 협정을 맺거나, SDoC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물론, 베트남이나 칠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TBT를 상호제거하기 위한 양자 간 협정이 상대국의 공

정적 의사에 따라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용이해져 추진된 것이다.

FTA 체결 시에는 대상국 간 기술격차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면 국내산업구조의 부가 가치사슬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나형근, 2004). 그러나 ICT 분야에서의 TBT Free Zone 확대를 위한 국가 간 협정 체결 시에는 기술적 차이를 체결여부의 핵심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가 ICT분야에서는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제품군이 많고, 둘째, 당사국가 간 TBT 제거가 가져오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와 협정을 맺어도 ICT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국가 간 상호 동시 TBT 제거는 양국 모두에게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이용규, 2014).

TBT Free Zone의 확대전략은 다양한 형태의 협정을 순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광역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순차적 전략은 시간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단기적으로 효과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광역 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지역경제공동체인 APEC은 구속력이 없어 집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동시다발적 양자 간 추진전략이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절해 보인다. 즉,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몇 개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실정에 맞는 협정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군을 따라 준비과정을 거쳐 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표 3〉 TBT Free Zone 추진 협정 추진 전략별 장·단점

	순차적 전략	동시다발적 양자간 전략	광역 추진 전략
개념	시간적 차이를 두고 정치적·행정적 용이성을 토대로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추진	동시에 여러 국가와 MRA 등을 추진	여러 국가를 묶어서 동시에 협정 추진
장점	단기적 효과가 큼	단기적 효과 및 중장기 효과 동시 존재	높은 효과
단점	장기적 관점에서는 효과가 제한적	정치적·행정적 지원 필요	낮은 가능성 및 정치적·행정적 지원 필요

우리나라 정부의 FTA 로드맵 상 추진상대국 선정 및 우선순위 설정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 정치·외교적 함의, 우리나라와 FTA 협상에 적극적인 국가,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등이었다(나형근, 2004). MR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고려하여야 하는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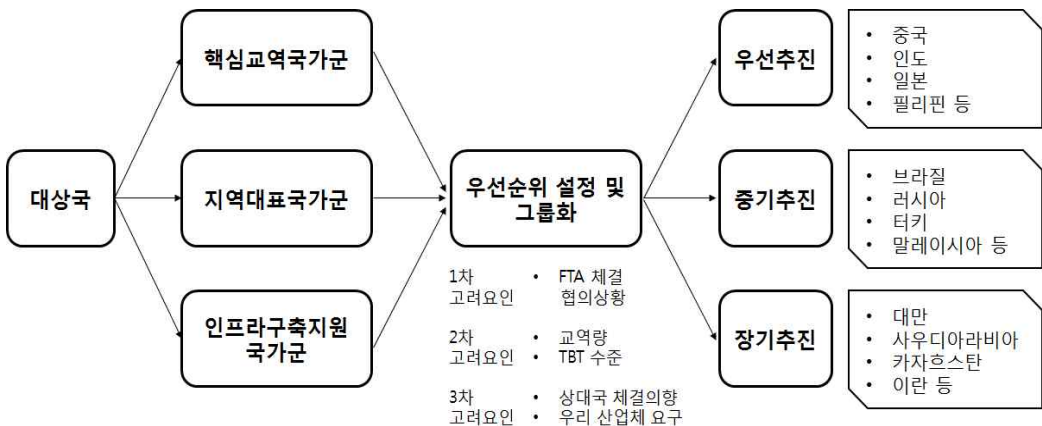
인은 상기 요인 외에도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MRA 상대국 우선순위 결정요인에는 경제적(파급효과) 측면에서 MRA 체결의 득실을 나타내는 IT 경쟁력 지수와 기술적(추진인프라) 측면에서 MRA 체결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인증체계 적합성 정도(허필선 외, 2007)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TBT Free Zone 확대를 위한 협정 체결 추진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상기에서 언급된 요인들 중 우선적으로 FTA 협상진행상황을 고려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역의 규모(ICT 제품 교역량), 상대국 기술장벽의 수준(TBT Free Zone 등급) 등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행정상의 용이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FTA 체결하지 않았지만, MRA 등의 협정 체결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우리 산업계의 요구를 고려하였다.

FTA 협상 진행 중인 국가와는 FTA와 동시에 MRA 협상을 추진할 수 있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ICT 제품교역의 규모를 감안하여야 하는 점은 협정의 효과가 교역의 규모에 의해 주로 결정되기 때문이며, TBT 수준을 감안하는 것은 TBT가 높은 지역이 협정 체결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TBT 협정을 맺을 의사가 있는 국가이면 수용하는 것이 양국 간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제조업체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TBT 제거/완화 협정의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과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협정방안은 양자 간 MRA, FTA 추진시 SDoC 제도 도입요청, 개발도상국가에게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TBT Free Zone 협정 대상국 분류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 체결 추진국가로 분류하였다. 단기적 체결 추진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는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등이고, 중기추진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는 브라질, 러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등이 있으며, 장기추진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이란 등이 있다. 이중 우선추진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는 협정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야 한다. APEC 회원국인 중국, 일본, 필리핀과는 APEC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체결의향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현재 MRA 협상 진행 중이다. 특히, 일본, 중국과의 협정체결은 양 국가 모두에게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되나, 이해의 부족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하다.

중기추진 국가에 대해서는 4~5년 전후의 기간 내에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상대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이 2007년에 MRA 2단계를 체결하고도 3년이 지나 발효가 된 이유는 상대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즉시 발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Violette, 2013). 장기적 추진국가군에 속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7~8년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군에 속하므로 관계자의 상호 방문 시에 정보교환 등을 추구하여 미래에 협정을 맺을 의향을 교감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는 우리와 교역량이 미미하여 특별한 협정을 맺을 경제적-정치적 이유가 적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이들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ICT 제품의 수출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제조업체가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TBT를 제거하여 TBT Free Zone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국 혹은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TBT Free Zone의 확대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커다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즉, TBT 제거/완화 협정은 경제적 영토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맹국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가와 동시 다발적인 협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순차적이거나 광역추진전략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기적 추진대상의 선정에는 본 연

구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던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동맹의 확대라는 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가로는 중국, 일본, 인도 등이다. 중국과 MRA를 체결하면 중국산 부적합제품의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하여 부적합제품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해결하여야 한다.¹⁸⁾ 즉, MRA 체결과 부적합 제품의 국내진입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일본과의 MRA 체결은 과거 일본에서 요구하였지만, 우리나라가 거부하여 체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는 완제품을 수출하지만, 부품을 수입한다. 따라서 부품의 경우에는 시험-인증절차가 생략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MRA를 체결하여야 하는 국가군에 속한다.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어서 MRA를 체결하기 용이하며, 수출총액을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MRA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동국가, 중남미 국가 중 지역 선도국가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중동국가 중에서는 교역규모가 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교역규모가 크고, 지역에서 선도국가역할을 하는 브라질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 우선적으로 체결하면 주변국가와의 체결은 훨씬 용이할 수 있다.

넷째, 적합성평가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지원은 점증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방식도 국가에 따라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브루나이는 석유자원이 풍부하여 개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상위권이나 국가 규모가 작아서 ICT 분야의 적합성평가 관련 법제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ICT 분야를 성장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어 ICT 분야의 적합성 평가분야의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산업분야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오스, 미얀마, 몽고 등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적합성평가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법제도의 미비가 향후 ICT 제품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미국과의 MRA 2단계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MRA 2단계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이용규, 2014). 그러나 미국과 MRA 2단계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민간기관이 미국 FCC 지정을 받은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이하, TCB)¹⁹⁾

18) EU의 경우, 중국산 부적합제품이 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산 제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역내에 위치한 사업자가 유통업체가 되어야 하며, 이들이 부적합제품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체와 연대하여 진다. 아울러 RAPEX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적합제품에 대한 정보를 역내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이용규, 2014).

19) 미국 FCC의 지정을 받은 TCB는 37개이며, 이중 역외에 위치한 TCB는 15개에 달한다. 아시아권에는 유일하게 일본에 위치한 UL Japan이 8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정을 FCC로부터 받았다.

가 될 수 있다. 국내 민간기관이 역내에서 TCB가 되면, KC, FCC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받고자 하는 중국의 제조업체 등 역외 제조업체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체계적으로 ICT 분야에서 TBT제거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순환보직체계에서는 전문성을 배양하기 어려워, 외국과 MRA 등 TBT 제거를 위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MRA 협상 체결이 부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문 인력의 부재라는 주장도 있다(이용규, 2014-b). 따라서 TBT 협상 관련 분야에 전문직을 마련하고 우수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시 연구 대상 국가별로 경험하는 TBT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하지 못하여, TBT의 등급이나 우선순위대상 선정에 있어서 현실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아울러, ICT 수출 주요 제품에 대한 국가별 시험-인증제도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면,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을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강병구(2001).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이 정보통신기기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논집」.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19: 1-26.
- 김동휴·이희진·곽주영(2013). 한국 FTA와 중국 FTA의 TBT 장 비교분석: 한중 FTA TBT 협상에 주는 함의. 「국제지역연구」. 16(4): 125-145.
- 나형근(2004).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FKI Issue Paper」. 전국경제인연합회.
- 남상열(2014).
- 배성수·김은정(2012). 자유무역시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표준분야 정책동향 및 이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백종현(2006). 통신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기기 MRA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21(2): 141-148.
- 이용규(2014). 정보통신부분에서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미간 협정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8(3): 1-26.
- _____(2014-b). FTA/MRA 확대에 따른 전파부분 시험·인증·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 국립전파연구원/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_____(2015). APEC TEL MRA 51차 회의록 전문. 비공개회의록.
- 장용준·서정민(20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19(1): 10-33.
- 허필선·박용재·임광선(2007).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추진대상국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 「국제지역연구」. 11(1): 541-561.
- Beghin and Bureau (2001). “Quantification of Sanitary, Phytosanitary,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for Trade Policy Analysis”, Working Paper 01-WP 219, Center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owa State University.
- Donahue, A. M. (2000). Equivalence: Not Quite Close Enough for th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Environmental Standards. Environmental Law, 30(2).
- Johnson, C. (2008).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ducing the Impact of Conformity Assessment Measures. USITC Working Paper. 19.
- ITC (1998). Recent Trends in U.S. Services Trade. 1998 Annual Report Investigation.
- OECD (1999). An Assessment Of The Costs For International Trade In Meeting Regulatory

Requirements.

OECD (2000). An Assessment Of The Costs For International Trade In Meeting Regulatory Requirements(TD/TC/WP(99)8/FINAL).

Violette·Michael F. (2013). “Introduction to TCB” APEC TEL MRA 48th Meeting, Unpublished Paper.

WTO (2012). Director-General’s Report on Trade-related Developments(Mid-October 2011 to mid-May 2012).

외교통상부 경제통상연구센터 (2012). G20 회원국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 보고서 회람. WTO/OECD/UNCTAD 사무국.

www.apec.org

www.customs.go.kr

www.iecee.org

www.strategyanalytics.com

www.tta.or.kr

www.wto.org

이용규(李容圭): 미국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Economic Inequality and Ethic Heterogeneity as Factors Affecting Crime and Police: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를 취득하고, Seton Hall University 정치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정보통신, 정부규제 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미간 협정사례를 중심으로”(2014),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시험 시장의 현황 분석 및 정부 개입 방안”(2013), “해양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결과와 사업화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질적 연구 방법의 혼합적 활용을 중심으로”(2012) 등이 있다(james@cau.ac.kr).

천지은(千智恩):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과정 중이며,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정보통신, 정부규제 분야이다(jieun_no1@naver.com).